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25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 의 자 : 서영교 · 차지호 · 이춘석
오세희 · 최민희 · 이성운
박지원 · 김기표 · 정태호
박은정 · 박균택 · 김문수
의원(12인)

제안이유

「가사소송법」은 제정·시행(1991. 1. 1.)된 지 34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음.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가사 관련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포함하지 못했던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의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이 가사사건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음.

이에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춘 가사 관련 내용을 담고, 가사사

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전면개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제1편 총칙

1)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법의 목적에 기존의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외에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추가하여 목적 규정이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반영하도록 함.

2)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정비(안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가) 가사사건 분류를 체계화하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함.

나) 종전에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가사사건, 대법원 판결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인정된 사건을 가정법원 관장 사항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함.

3)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안 제6조)

지방법원은 제1심이 계속되고 있는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이고, 이들 사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민사사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4) 가사조사관의 임무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가) 가정법원에 사실조사나 필요한 검사 등을 하는 가사조사관을 두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사조사관의 임면(任免)·정원·업무범위와 업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 대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5)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안 제16조)

가)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나)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학·상담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절차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6)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 강화(안 제20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의 진술을 듣도록 함.

나. 제2편 가사소송

1)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안 제31조)

가정법원은 이혼의 무효, 친생부인, 인지청구 등의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법원에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추가(안 제37조)

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함.

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다. 제3편 가사비송

1) 「비송사건절차법」 으로부터의 독립 및 각칙 편제 정비(제3편)

가) 민사비송과 가사비송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사비송 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나)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 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 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으로써, 법률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2) 가사비송사건 청구의 취하 명시(안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가) 가사비송사건의 명확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미성년자,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개시, 친권자 지정, 친권상실·정지 등의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도록 함.

3) 가사비송사건 재판의 방식(안 제67조)

가사비송사건의 실체에 관한 중국재판의 본질은 결정이고, 상급심의 재판형식도 결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국재판의 형식을 심판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4) 가사비송사건 불복제도 정비(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즉시항고에 관한 일반규정을 통합하여 법률에 규정함.

5)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 청취 규정 정비(안 제83조 및 별표 4)

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진술을 들어야 할 자의 범위를 사건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

6)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 제도 도입(안 제84조)

법원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후견사건 가운데 사회취약 계층뿐 아니라 가족의 방임, 학대 등에 이르기까지 피후견인의 복리와 보호, 권익실현에 공백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7)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 인정(안 제115조)

가사소송사건의 피고나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사실심 절차 종결 시까지 청구와 서로 관련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8)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근거 마련(안 제117조)

가)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친권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 성질상 화해에 적합하지 아니

한 일부 가사비송사건은 제외함.

나) 가정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4편 가사조정

1)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제도 등 준용(안 제127조)

종전에는 가사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에 관한 규정과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규정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가사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조정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함.

2) 조정의 원칙 명시(안 제137조)

가) 조정기관은 조정을 할 때에 당사자 및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분쟁을 평화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정의 원칙을 명시함.

나) 조정기관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함.

3)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처리(안 제139조)

가정법원은 조정이 신청되었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련

사건으로 이송된 민사사건의 경우도 지방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함.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안 제141조)

가) 가정법원 등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우 현상 변경 행위나 물건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처분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처분의 취소·변경 제도를 신설함.

나)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함.

2)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46조)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인도청구의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확대함.

바. 제6편 벌칙

1) 감치명령 요건 완화(안 제152조)

종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금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 부양료·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

2) 형벌 규정의 벌금액수 현실화(안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

가)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사회 변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나)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보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각각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재산조회 결과 등을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및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 및 당사자 등의 책무) ① 가정법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사사건(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절차가 적정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생활 보호의 원칙) 법관, 법원공무원, 그 밖에 직무상 지위로 인하여 가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람은 당사자와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사사건에 대한 심리(審理) 및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하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라 한다)

나.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이하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이라 한다)

2. 가사비송사건

가. 별표 2에서 정하는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이하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이라 한다)

나. 별표 3에서 정하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이하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이라 한다)

3. 그 밖에 이 법에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으로 정한 사건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으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재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하는 사건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절차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의 성질에 따라 심리·재판한다.

제5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 지정) ①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할법원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해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해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① 지방법원은 제1심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민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소송(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호의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일 것

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遺留分)의 반환청구 사건

나. 「민법」 제839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사건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당사자가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된 가사소송 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일 것

3. 제2호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 결과가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와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민사사건은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조(관련 사건의 병합 등) 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訴)로 제기할 수 있다.

1. 청구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경우

2. 1개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다른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1.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가 있을 것

2. 제1호의 사건과 제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 중일 것

④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제3항에 따라 병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전원에게, 병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병합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병합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⑥ 가정법원은 제6조에 따라 이송된 관련 민사사건을 해당 가사사건과 병합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제8조(법관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 본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거나, 사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인 경우
 2. 법관이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법관이 당사자등의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경우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경우
 5. 법관이 당사자등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6.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審級)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경우.
-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법원사무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2. 가사조사관
3. 조정위원

제10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소의 제기, 결정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검사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제11조(가사조사관) ①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검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가사조사관을 둔다.

② 가사조사관의 임면(任免), 정원, 업무 범위, 사실조사의 방법, 절차 및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당사자 등을 위한 지원) ①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생활환경이나 관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사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단체 등과의 연계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지원
3.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 등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 연계
4. 그 밖에 필요한 지원

② 법원행정처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직을 둔다.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상담 권고) 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전문 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전문 상담기관을 상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위원 또는 상담기관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본인 출석주의)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제54조의 비송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①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이하 “절차보조인”이라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해당 절차의 특성, 미성년자의 나이와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절차보조인은 대화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의사 및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절차보조인은 재판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와 동석하거나 그의 진술을 보조하는 등 미성년자를 도울 수 있다.

⑥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절차보조인이 임무수행을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2. 절차보조인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절차보조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⑦ 절차보조인의 자격, 선임 및 해임 절차, 수당 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절차구조) ①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의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敗訴)할 것이 분명하거나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절차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절차구조에 대한 재판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가정법원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절차구조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7조에 따른 절차구조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실조사의 촉탁 등) ①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관서 등 행정기관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의료기관, 학교,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와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촉탁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기관·단체 및 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진술할 수 없거나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다른 제소권자나 청구권자가 있는 사건의 수계에 관한 특칙)

①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원고 또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나 청구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1. 사망

2.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만, 소송능력 또는 비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자는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수계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계신청은 수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수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 또는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하거나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23조(보도 등 금지) 누구든지 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나이·직업 또는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영상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서(調書)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
2. 기록의 열람·복사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침해되어 그 사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 등이 있을 때

④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 및 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⑦ 가사사건의 기록 열람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 및 제163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위임 규정)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편 가사소송

제1장 통칙

제26조(적용 법률) ① 가사소송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에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

285조, 제288조(자백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49조(같은 법 제360조제1항, 제3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0조(같은 법 제360조제1항, 제3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1조제2항, 제369조 및 제4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에는 「민사소송법」 제148조제2항·제3항 및 제2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은 다른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하는 경우에도 반소(反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관할) ① 가사소송사건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居所(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 주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관할 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소송능력) 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원고로서 소의 제기, 그에 따른 제1심 소송행위[반소에 대한 응소(應訴)를 포함한다] 및 항소 또는 항고만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의 대리를 시작한 때부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민사소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제29조(당사자의 추가·경정) ①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

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거나 피고를 경정(更正)하는 것은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소송절차 공개의 예외) ① 재판장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사건 본인, 증인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법정대리인, 사건 본인, 증인, 절차보조인 또는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소송절차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통지)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송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속의 순위 또는 상속분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그 밖에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명,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1 제1호가목3)의 이혼의 무효 사건

2. 별표 1 제1호가목4)의 이혼의 취소 사건
3. 별표 1 제1호나목2)의 친생부인 사건
4. 별표 1 제1호나목6)의 인지청구 사건
5. 별표 1 제1호나목7)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
6. 별표 1 제1호나목10)의 과양의 무효 사건
7. 별표 1 제1호나목11)의 과양의 취소 사건
8. 별표 1 제1호나목15)의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②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명단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직권조사와 이에 따른 협력의무) ① 가정법원이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4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제36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①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장 혼인관계 소송

제37조(관할)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혼인관계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할 때에는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부부가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생활하였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정법원

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나.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6.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제38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별표 1 제1호가목1) 및 3)에 따른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이혼취소의 소의 상대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별표 1 제1호가목1)·2) 및 5)에 따른 부부의 혼인의 무효나 취소,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2. 「민법」 제8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제41조(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의 특칙) 별표 1 제1호가목5)의 재판상 이혼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중 재판상 화해 및 청구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 소송

제1절 친생자관계 소송

제42조(관할) ①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사건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별표 1 제1호나목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은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3조(아버지의 결정 사건의 소의 당사자) ① 별표 1 제1호나목1)에 따른 아버지의 결정 사건의 소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를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소를 어머니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니의 전 배우자가 제기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4조(인지무효의 소 등의 당사자 등) 별표 1 제1호나목3)에 따른 인지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하여는 제38조와 제39조를 준용하고, 별표 1 제1호나목4)·5) 및 7)에 따른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당사자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하며, 별표 1 제1호나목6)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의 협의 권고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5조(유전인자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心證)을 얻지 못하였을 것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절 입양·친양자입양 관계 소송

제46조(관할) 별표 1 제1호나목8)부터 15)까지의 사건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7조(입양무효의 소 등의 당사자) 별표 1 제1호나목8) 및 10)에 따른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하여는 제38조와 제39조를 준용하고, 별표 1 제1호나목9)·11)·13) 및 14)에 따른 입양·친양자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파양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8조(재판상 파양 사건에서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의 특칙)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성년자 사이의 별표 1 제1호나목12)의 재판상 파양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중 재판상 화해 및 청구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통칙

제49조(관할) ①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50조(비송능력) 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2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각 사건

2.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3 제1호의 각 사건,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양육비 지급청구 사건,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의 각 사건.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사건 중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에 관한 처분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사비송절차의 비송능력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중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절차가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바꿨을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절차에서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당사자의 소송능력, 자격 상실에 따른 소송절

차의 중단·수계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4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237조제2항 및 제238조를 준용한다.

제52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법률관계가 변경될 수 있는 자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정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지위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참가를 신청하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의 결정과 제5항에 따른 참가결정은 당사자 및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결정을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의 참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

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5항의 참가결정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차에 참가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3조(가사비송사건의 수계) ① 가사비송사건에서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의 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절차를 속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는 그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인등에게 절차를 수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차를 수계할 자,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33조제2항, 제235조 후단, 제237조제1항 후단, 제238조, 제239조 후단, 제240조 후단, 제242조, 제243조 및 제247조를 준용한다.

제54조(비송대리인) ① 변호사 또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가사비송사건의 비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 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당사자

가 되는 경우에 그 직위상 해당 사건에 관한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③ 가사비송사건의 비송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대리인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비용의 부담) ①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절차의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한 사건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준용규정) 가사비송사건 절차의 비용 부담과 담보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청구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결정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③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건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청구가 당사자
외의 사건 본인의 신분관계나 그 밖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경우
만 해당한다)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청구 연월일
6. 가정법원의 표시

④ 말로 결정을 청구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4항의 경우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
서(이하 “청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재판장 등의 청구서 심사권)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
게 할 수 있다.

1. 청구서가 제57조에 어긋나는 경우
2.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재판장은 청구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명령으로 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청구서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서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9조(청구서 부분의 송달 등) ①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서 또는 청구조서의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 또는 청구조서의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2 제1호에 따른 후견에 관한 사건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그 청구가 있었던 사실 및 청구 취지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청구의 취하)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7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청구 취하의 효력이 있다.

1. 제67조제1항의 결정이 있은 후에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다음 각 목의 사건에서 상대방이 본안(本案)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審問期日)에 진술한 경우

가. 별표 3 제1호다목의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

나. 별표 3 제4호나목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

③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 청구의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

2. 상대방이 출석한 심문기일에 제3항 단서에 따라 말로 취하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날

3.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심문기일에 제3항 단서에 따라 말로 취하하였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

⑦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1조(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취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청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가목의 사건 중 「민법」 제9조제1항 및 제959조의2 0제1항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청구
2. 별표 2 제1호다목의 사건 중 「민법」 제12조제1항 및 제959조의2 0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개시의 청구
3. 별표 2 제1호마목의 사건 중 「민법」 제14조의2에 따른 특정후견의 청구
4. 별표 2 제1호바목의 사건 중 「민법」 제9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청구
5. 별표 2 제1호서목의 사건 중 「민법」 제959조의15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청구
6. 별표 2 제7호차목의 사건 중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청구
7. 별표 3 제2호다목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8. 별표 3 제2호라목의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청구

제62조(청구 취하의 간주) ① 청구인(청구의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심문기일을 정하여

청구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정한 심문기일이나 그 뒤에 열린 심문기일에 청구인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심문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심문기일 또는 그 뒤의 심문기일에 청구인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는 “상소”로, “청구인”은 “상소를 제기한 사람”으로 본다.

⑤ 제61조에 따라 청구의 취하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사건의 병합) 여러 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제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1개의 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신청할 법원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64조(심문의 비공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65조(진술 청취의 방법) 가정법원이 이 법 및 대법원규칙에 따라 당

사자, 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그를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절차보조인의 보고 등 적당한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진술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 의식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증거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探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고,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③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99조제2항, 제349조(같은 법 제360조제1항, 제3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0조(같은 법 제360조제1항, 제3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1조제2항 및 제369조는 제외한다.

④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심문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7조(재판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중국재판(終局裁判)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한 법관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한 법관이 기명날인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사건 본인
2. 주문(主文)
3. 이유
4. 법원

③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의 결정서에는 제2항제3호의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사비송사건의 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결정의 고지 및 효력발생시기) ① 가정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4장제4절을 준용한다.

② 결정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이 고지를 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69조(결정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의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결정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제70조(가집행)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미성년 자녀의 인도에 관한 결정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집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③ 판결로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71조(재판의 취소·변경) ① 가정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청구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당사자와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

다.

제72조(항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을 준용한다.

제73조(즉시항고) ① 제67조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즉시항고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결정을 고지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당사자가 여럿일 때에는 최후로 결정을 고지받은 당사자를 말한다)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

⑤ 즉시항고는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74조(항고법원의 재판) ①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재항고) 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② 재항고심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2장을 준용한다.

제76조(검사에 대한 통지) 가정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가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준용규정) ① 가사비송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추가·경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152조부터 제160조까지 및 같은 법 제1편제4장제3절을 준용한다.

제2장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제1절 통칙

제78조(관할)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중 이 법에서 관할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79조(심리 방법 등) ①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의 결정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당사자와 관계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제2절 후견에 관한 사건

제80조(관할 등) ① 별표 2 제1호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제1호가목·다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결정, 같은 호 마목·바목·서목의 사건 중 특정후견의 결정 및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의 결정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별표 2 제1호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해당 결정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을 말한다)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호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항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

2.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3.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제3항의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피후견인이,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1조(정신상태의 감정) ① 가정법원은 별표 2 제1호가목·다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별표 2 제1호가목·다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2조(진단 결과 등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나 그 밖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별표 2 제1호마목의 사건 중 특정후견의 결정을 할 경우에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2. 별표 2 제1호서목의 사건 중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결정을 할 경우에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후견에 관한 사건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별표 4 제1호, 제2호, 제19호 및 제22호의 사건에서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심문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65조 및 제366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84조(국선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건 본인,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건 본인에게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있더라도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건 본인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건 본인의 재산에서 후견인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되는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하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이라 한다)의 보수 및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의 자격, 선임 및 취소, 보수 및 비용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후견사무 등에 관한 지시) 가정법원은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86조(후견사무에 대한 감독 등)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후견사무·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또는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

2.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

② 가정법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무의 실태 또는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자에게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하면 피후견인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수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자의 의무, 책임, 보수 및 비용 청구 등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제87조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제86조에 따라 사무의 실태 또는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자는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86조에 따라 사무의 실태 또는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민법」 제954조에

다른 조사 또는 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가정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자에게 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88조(결정의 고지 등) ① 가정법원은 후견에 관한 사건의 결정을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후견인(그 결정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 및 후견감독인(그 결정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즉시항고)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미성년후견에 관한 결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별표 2 제1호바목의 사건 중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결정: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결정: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

후견감독인

다. 별표 2 제1호카목·타목의 사건 중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결정 및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결정: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성년후견에 관한 결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별표 2 제1호가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의 개시결정: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자, 같은 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

나.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결정: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

다. 별표 2 제1호카목·타목의 사건 중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결정,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결정 및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결정: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한정후견에 관한 결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별표 2 제1호다목의 사건 중 한정후견의 개시결정: 「민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같은 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

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

나.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결정: 변경이 청구된 한정후견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

다. 별표 2 제1호카목·타목의 사건 중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결정,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결정 및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결정: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 특정후견에 관한 결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별표 2 제1호마목의 사건 중 특정후견의 결정: 「민법」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 같은 법 제959조의2제1항의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

나.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결정: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감독인

5. 임의후견에 관한 결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별표 2 제1호서목의 사건 중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결정: 변경이 청구된 임의후견감독인

나. 별표 2 제1호저목의 임의후견인의 해임결정: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

다. 별표 2 제1호처목의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결정: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

② 다음 각 호의 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인 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가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의 종료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11조에 규정된 자
2. 별표 2 제1호다목의 사건 중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14조에 규정된 자
3.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940조에 규정된 자
4.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결정: 「민법」 제940조에 규정된 자
5.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959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된 자
6. 별표 2 제1호바목·아목의 사건 중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959조의9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된 자
7. 별표 2 제1호서목의 사건 중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된 자

8. 별표 2 제1호저목의 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결정: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규정된 자

제3절 부재자 및 실종에 관한 사건

제90조(관할)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별표 2 제2호나목의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91조(결정의 고지) ① 가정법원은 별표 2 제2호가목의 사건 중 재산 관리인의 선임, 개임 또는 해임의 결정을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그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별표 2 제2호나목의 사건 중 실종선고를 취소한 결정을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사건 본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92조(즉시항고)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사건 중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을 개임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별표 2 제2호나목의 사건 중 실종을 선고한 결정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사건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실

종선고를 취소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절 성(姓)과 본(本)에 관한 사건

제93조(관할) 별표 2 제3호의 성과 본에 관한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94조(진술 청취)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부모와 자녀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1. 별표 2 제3호나목의 자녀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결정
2. 별표 2 제3호다목의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결정

제5절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사건

제95조(관할) 별표 2 제4호의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사건은 제37조제1호, 제3호, 제4호의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96조(즉시항고) 별표 2 제4호의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절 친생자에 관한 사건

제97조(관할) 별표 2 제5호의 친생자에 관한 사건은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98조(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별표 2 제5호가목 및 나목의 친생부인의 허가결정 또는 인지의 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어머니의 전 남편과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술은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

제99조(즉시항고) 별표 2 제5호가목 및 나목의 친생부인의 허가결정 또는 인지의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절 양자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건

제100조(관할) 별표 2 제6호의 양자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건은 양자·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01조(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별표 2 제6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사건에서 입양 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사람

2.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3.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4.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5. 양부모가 될 사람
6.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별표 2 제6호마목의 친양자 입양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1. 친양자가 될 사람
2. 친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
4.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5. 양부모가 될 사람
6.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제102조(양육능력 등에 대한 조사) 가정법원은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2. 국세청장: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국가경찰관서의 장: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자료
4.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진료기록자료(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3조(결정의 고지) 가정법원은 별표 2 제6호가목·다목 및 마목의 입양에 대한 허가결정과 친양자 입양의 허가결정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와 법정대리인

제104조(즉시항고) 별표 2 제6호가목·다목 및 마목의 입양에 대한 허가결정과 친양자 입양의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제101조에 규정된 자(양부모가 될 사람은 제외한다)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절 친권에 관한 사건

제105조(관할) ① 별표 2 제7호의 친권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제7호가목의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 사건은 제3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06조(즉시항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별표 2 제7호나목의 사건 중 친권자의 지정결정: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2. 별표 2 제7호마목 및 차목의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결정: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제9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107조(관할) 별표 2 제8호의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08조(결정의 고지)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결정에 대해서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별표 2 제8호가목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 허가결정: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그 상속인
2. 별표 2 제8호라목의 감정인의 선임결정: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그 감정인

3. 별표 2 제8호마목의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결정: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그 상속재산관리인 및 공동상속인
4. 별표 2 제8호바목의 상속재산의 분리결정: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그 상속인
5. 별표 2 제8호차목의 상속재산의 분여(分與)결정: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제109조(즉시항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별표 2 제8호바목의 상속재산의 분리결정: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된 자
2. 별표 2 제8호차목의 상속재산의 분여결정: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

제10절 유언에 관한 사건

제110조(관할) ① 별표 2 제9호의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제9호가목의 구수증서(口授證書) 유언의 검인 사건은 제1항에 따른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외에 유언

자 주소지의 가정법원도 관할한다.

제111조(결정의 고지) 가정법원은 별표 2 제9호라목 및 자목의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해임 결정을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그 유언집행자와 상속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2조(즉시항고) 다음 각 호의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별표 2 제9호가목의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결정: 이해관계인
2. 별표 2 제9호가목의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 청구를 기각한 결정:
「민법」 제1070조제2항에 규정된 자
3. 별표 2 제9호라목에 따른 사건 중 유언집행자의 선임결정: 이해관계인
4. 별표 2 제9호자목의 유언집행자의 해임결정: 유언집행자
5. 별표 2 제9호차목의 부담이 있는 유언의 취소결정: 수증자(受贈者),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3장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제1절 통칙

제113조(관할)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14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2절을 준용한다.

제115조(반대청구) 가사소송사건의 피고나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사실심 절차 종결 시까지 원고 또는 청구인의 청구와 서로 관련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6조(심리 방법 등) ①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 전에 당사자와 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그 밖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화해 등) ①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성립한 화해를 심문조서에 적었을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 3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사건은 제외한다.

② 가정법원,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는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등의 송부, 이의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및 제226조부터 제2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재산명시) ① 가정법원은 별표 3 제1호가목·다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및 같은 표 제4호나목의 부양료, 재산분할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의 신청,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목록을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재산조회) ① 제118조에 따른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회사등, 그 밖의 단체 등에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회사등, 그 밖의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 절차, 조회 비용, 조회 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 결과를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

제120조(당사자) 별표 3 제1호의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의 결정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절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

제121조(관할)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제113조에서 정한 가정법원 외에 사건 본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도 관할한다.

1. 별표 3 제2호가목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혼인 중의 양육비 지급청구,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127조에서 같다)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2. 별표 3 제2호나목의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
3. 별표 3 제2호다목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사건
4. 별표 3 제2호라목 중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사건

제122조(당사자) ① 별표 3 제2호가목의 사건 중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사건의 결정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자녀 및 검사도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 아닌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의 결정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의 변경 사건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도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③ 별표 3 제2호가목의 사건 중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들이 당사자가 된다. 다만,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여서는 청구할 수 없다.

1. 면접교섭권의 처분: 「민법」 제837조의2제1항·제2항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 상호 간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거나 양육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2.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 「민법」 제837조의2제3항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 상호 간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 별표 3 제2호다목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및 같은 호 라목 중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사건의 결정은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⑤ 별표 3 제2호라목의 사건 중 친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실권 회복의 선고 사건의 결정은 청구 당시 친권 또는 친권의 일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대행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23조(즉시항고) 별표 3 제2호다목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및 같은 호 라목의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외에 「민법」 제925조에 규정된 사람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절 부양에 관한 사건

제124조(즉시항고) 별표 3 제3호의 부양에 관한 처분(친족 사이의 구상청구를 포함한다)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외에 이해관계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125조(당사자) 별표 3 제4호의 상속에 관한 사건의 결정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26조(즉시항고) ① 별표 3 제4호가목 및 나목의 기여분의 결정과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외에 이해관

제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권자 중 1명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결정의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편 가사조정

제127조(준용 법률) 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가사조정에서의 당사자의 추가·경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28조(조정 전치주의)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결정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5)의 재판상 이혼 사건 및 같은 호 나목12)의 재판상 파양 사건(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성년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호 나목16)의 상속권 상실 사건
2. 별표 1 제2호의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3. 별표 3 제1호의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
4. 별표 3 제2호가목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5. 별표 3 제2호나목의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

6. 별표 3 제3호의 부양에 관한 사건

7. 별표 3 제4호의 상속에 관한 사건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결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9조(관할) 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사조정사건의 이송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조정기관) ①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명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소법원은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은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131조(조정위원) ①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1. 미리 고등법원장, 가정법원장이나 가정법원 지원장이 위촉한 사람

2.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조정에 관여하는 일

2.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는 일

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제132조(조정담당판사의 지정) 조정담당판사는 고등법원장,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 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

제133조(조정장)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제130조제1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2. 제130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3. 제130조제4항의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제134조(조정의 신청 방식) 조정의 신청 방식에 관하여는 제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5조(사실의 사전 조사)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6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조정의 목적인 청구
2. 제1호의 청구와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가사소송사건 및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

② 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이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제137조(조정의 원칙) ① 조정기관은 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할 것

2. 분쟁을 평화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3. 미성년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② 조정기관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8조(조정의 성립 및 효력)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 판결 또는 확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제136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민사사건 청구의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민사사건 중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을 수 있는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가정법원이 재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0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1. 조정의 목적인 가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2. 제1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회부할 경우

제5편 이행의 확보

제141조(사전처분)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결정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보호, 감독과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②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1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급박한 경우 단독으로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제148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은 집행력을 가진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에 관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의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01조까지 및 제303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⑧ 제7항의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⑨ 제7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담보를 제공하게 하면서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

2.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

3.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명령

제142조(가압류·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141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6조제1항에 따라 이송된 이후의 관련 민사사건과 제139조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판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관련 민사사건을 포함한다)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01조까지 및 제303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87조를 준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제143조(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한 후 양육비가 감액된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또는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⑦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⑧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4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5항의 명령을 양육비채권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⑨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⑪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4조(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과 제6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또는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결정, 담보제공방식,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담보의 취소 및 담보물변경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⑨ 제2항과 제6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148조제1항과 제152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5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결정, 사전처분결정,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부양료 또는 양육비의 지급 의무

2. 미성년 자녀의 인도 의무

3.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결정, 사전처분결정, 조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하거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을 말한다)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제2항에서 정한 가정법원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도 관할한다.

1. 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의무의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2. 그 외의 의무의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④ 제3항제1호의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은 관련 이행명령 사건이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련 이행명령 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병합결정 및 병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148조제1항과

제152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6조(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 ① 이 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민사집행법」 제3조제1항의 집행법원은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 또는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된다.

②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이행명령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이행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집행법원은 제2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자녀의 나이 및 의사능력 유무
2. 자녀의 의사, 건강 및 심리상태
3. 자녀의 양육상황
4. 당사자와 자녀 사이의 상황 및 집행에 따라 자녀가 영향을 받는 정도

④ 집행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은 미성년 자녀의 인도(引渡)를 집행할 때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자녀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편 벌칙

제147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① 제15조에 따른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제15조에 따른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을 결정으로 구인(拘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으로 부과한다.

제148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1항, 제143조제1항, 제1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45조제1항의 명령이나 제1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하면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부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제45조제1항, 제143조제1항, 제1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45조제1항의 명령이나 제1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수검 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49조(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부과한다.

제150조(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① 제11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51조(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① 제1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52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44조제6항에 따른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료 또는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148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153조(즉시항고) ①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즉시항고는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4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제147조부터 제1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248조제2항·제3항 및 제250조제2항 중 검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5조(감치를 명하는 재판절차) 제148조제2항과 제152조에 따른 감치를 명하는 재판절차와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56조(비밀누설죄) ①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과정이나 조정장·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숫자를 누설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려면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157조(보도 등 금지 위반죄) 제23조에 따른 보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제118조에 따른 재산목록, 제119조에 따른 재산조회 결과를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미성년자의 진술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거나 청구되는 가사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거나 청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실조사 등에 대한 당사자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및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진술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4조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가사비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②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법정기간의 진행이 시작된 경우에 그 법정기간과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비송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된 가사비송사건의 비송대리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사전처분의 집행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14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행해진 사전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국선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3조(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신청된 미성년 자녀의 인도청구 집행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금전의 임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의 금전 임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금전을 임치한 경우의 의무 이행 간주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 신청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26일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법률 제1790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가사소송법」(법률 제1790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단서 중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을 “성·본 계속사용허가결정”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심판이”를 “결정이”로, “심판서”를 “결정서”로 한다.

②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③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사소송법」 제2조”를 “「가사소송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사소송법」에 따른 다류(類) 가사소송 사건”을 “「가사소송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취소심판”을 각각 “취소결정”으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⑤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성년후견종료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정후견개시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정후견종료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특정후견의 심판)”을 “(특정후견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심판 사이의 관계)”를 “(결정 사이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제690조 후단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804조제2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819조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836조의2제4항 중 “심판정본”을 “결정정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가사소송법」 제41조”를 “「가사소송법」 제69조”로 한다.

제848조제2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871조제2항 전단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893조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929조의 제목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를 “(성년후견 결정에 의한 후견의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성년후견개시결정”으로,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959조의2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제959조의4제1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959조의11제1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959조의20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⑦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및 제2호 중 “판결·심판·결정·명령”을 각각 “판결·결정·명령”으로 한다.

제31조의2 단서 중 “판결·심판·결정·명령”을 “판결·결정·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을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결·심판·결정·명령”을 “판결·결정·명령”으로 한다.

⑧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호가목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⑨ 부채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심판절차”를 “결정절차”로 한다.

⑩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6항제1호 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및 제44조”를 “「가사소송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별표 2 제8호아목 및 제107조”로 한다.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심판청구”를 각각 “결정청구”로 한다.

⑫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가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 중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가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가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가사소송법」 제15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⑭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용심판”을 “인용결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⑮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555호, 시행 2025. 7.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인용심판”을 “인용결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⑯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53호, 시행 2025. 7.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용심판”을 “인용결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용심판”을 “인용결정”으로 한다.

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⑱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⑲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가사소송법」 제141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제142조에 따른 가처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를 “「가사소송법」 제145조, 제148조제1항 및 제152조”로 한다.

제14조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다목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

제27조 중 “「가사소송법」 제62조”를 “「가사소송법」 제141조”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하거나 준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거나 준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사소송사건(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유형		사건 내용
1. 가족관계 가사소송 사건	가. 혼인관계 사건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무효 4) 이혼의 취소 5) 재판상 이혼 6)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나. 부모와 자 녀 관계 사 건	1) 아버지의 결정 2) 친생부인 3) 인지의 무효 4) 인지의 취소 5) 인지에 대한 이의 6) 인지청구 7)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8) 입양의 무효 9) 입양의 취소 10) 파양의 무효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15)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16) 상속권 상실
2. 재산관계 가사소송 사건	가. 약혼의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 나.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 다.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 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마.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별표 2]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4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사건 내용	근거 규정
1. 후견에 관한 사건	
가. 성년후견개시의 결정과 그 종료의 결정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
나.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다. 한정후견개시의 결정과 그 종료의 결정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
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특정후견의 결정과 그 종료의 결정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
바.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40조의6제1항,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
사.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아.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민법」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제959조의10 및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36조제3항·제940조
자.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민법」 제939조(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 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 및 제944조(같은 법 제94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임의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민법」 제947조의2제2항(같은 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47조의2제4항(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타.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임의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민법」 제947조의2제5항(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파.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민법」 제949조의2(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민법」 제848조제1항 및 제950조제2항(같은 법 제948조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거. 피미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48조제2항,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너.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	「민법」 제955조(같은 법 제940조의7, 제948조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

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용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더. 후견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 허가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러.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결정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민법」 제959조의4
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민법」 제959조의8
버.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결정	「민법」 제959조의11
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민법」 제959조의15제1항·제3항·제4항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
어.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민법」 제959조의16제2항
저. 임의후견인의 해임	「민법」 제959조의17제2항
처.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민법」 제959조의18제2항
2. 부재자 및 실종에 관한 사건	
가.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나.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3. 성과 본에 관한 사건	
가. 성과 본의 창설허가	「민법」 제781조제4항
나.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민법」 제781조제5항

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민법」 제781조제6항
4.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사건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
5. 친생자에 관한 사건	
가. 친생부인의 허가	「민법」 제854조의2
나. 인지의 허가	「민법」 제855조의2
6. 양자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건	
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민법」 제867조
나.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	「민법」 제871조제2항
다.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67조
라.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악청구에 대한 허가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
마. 친양자 입양의 결정	「민법」 제908조의2
7. 친권에 관한 사건	
가.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
나.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대행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
라.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54조
마.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민법」 제909조의2제6항
바.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민법」 제921조(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959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 가	「민법」 제927조
자. 새로운 친권자의 지정	「민법」 제927조의2제2항
차. 미성년후견인 지정 후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민법」 제931조제2항
8. 상속에 관한 사건	
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 간의 연장허가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나.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 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 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 1041조
라. 감정인의 선임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 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 조제2항
마.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 임	「민법」 제1040조제1항
바. 상속재산의 분리	「민법」 제1045조
사.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 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47조
아.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53조
자. 상속인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
차. 상속재산의 분여	「민법」 제1057조의2
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민법」 제1004조의2제7항
9. 유언에 관한 사건	
가.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	「민법」 제1070조제2항

나.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민법」 제1091조제1항
다. 유언증서의 개봉	「민법」 제1092조
라.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96조
마.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민법」 제1097조제2항
사.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민법」 제1104조제1항
아.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민법」 제1105조
자. 유언집행자의 해임	「민법」 제1106조
차. 부담이 있는 유언의 취소	「민법」 제1111조

[별표 3]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4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사건 내용	근거 규정
1.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	
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
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민법」 제829조제3항
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	
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혼인 중의 양육비 지급청구,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를 포함한다)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혼인무효 청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될 때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3조
나.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및 혼인무효 청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될 때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민법」 제922조의2
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
3. 부양에 관한 사건	
부양에 관한 처분(친족 사이의 구상청구를 포함한다)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
4. 상속에 관한 사건	

가. 기여분의 결정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
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1013조제2항

[별표 4]

후견에 관한 사건의 결정에서 진술을 들어야 할 자(제83조제1항 관련)

사건 내용	진술을 들어야 할 자
1. 성년후견개시 · 한정후견개시의 결정 및 특정후견의 결정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다만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인
2. 성년후견종료 · 한정후견종료 · 특정후견종료의 결정	가.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나.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다. 피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
3.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4.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5.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6. 미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의 선임	가.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나.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인이 될 자 다.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인이 될 자 라.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인이 될 자
7. 미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의 변경	가. 피미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나.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이 될 자 다. 피한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한정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 될 자 라. 피특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이 될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에 대해서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
8.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9. 미성년후견감독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가. 피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 나.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 다.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자 라.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자
10. 미성년후견감독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가. 미성년후견인, 피미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감독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 나.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 다.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한정후견감독인 및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자 라. 특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감독인 및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자
1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2.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임의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3.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임의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4.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가.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 특정후견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감독인 ·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감독인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감독인 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인 및 한정후견감독인 다.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감독인 라.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임의후견감독인
15. 미성년후견감독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가. 피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 나.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 다.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감독인
16.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결정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17.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의 명령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18.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결정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19.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자 및 임의후견인이 될 자
20.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피임의후견인, 임의후견인, 그 변경이 청구된 임의후견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자
21. 임의후견인의 해임	피임의후견인 및 그 해임이 청구된 임의후견인
22.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피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인